

#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7월 12일) 상정
- 제12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7월 13일)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### □ 제안이유

-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서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,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일부 비대한 국·과 단위 조직을 분리·신설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,
- 사회복지, 공원관리, 도시정비, 도서관, 보건,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증설함으로써 86만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비대한 국(소)·과 단위 조직을 분리·신설하고,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도국으로 통폐합함.(안 제5조, 제8조제1항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 및 제11조)

### <국단위 기구 분리·신설>

- 건설교통국 → 도시국, 건설교통국
- 복지환경국 → 복지국, 환경수도국
- 상하수도사업소 → 환경수도국으로 통폐합

### <과단위 기구 신설>

- 시 본 청 : 예산법무과, 환경보전과
- 직속기관 :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
- 구 청 : 원미구 경제교통과, 소사구 경제교통과, 오정구 경제교통과
-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과, 수도과, 정수과, 하수과는 환경수도국으로,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하며,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사업소 기구를 시본청 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함.  
(안 제10조의2, 제10조의3 및 제11조, 별표 1)
  - 청소사업소 → 환경수도국 청소과
  - 농산지원사업소 → 경제문화국 농산지원과
  - 도시개발사업소 → 도시국 도시개발과
  - 녹지공원관리사업소 → 도시국 녹지공원과
  - 시설사업소 → 도시국 시설공사과
  - 지하철건설사업단 → 건설교통국 도시철도과
  - 차량관리사업소 → 건설교통국 차량관리과
- 일부 과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고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함.  
(안 제7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)
  - 주민자치과 → 자치행정과
  - 업무과 → 수도행정과

- 수도과 → 수도시설과
  - 지식산업과 → 문화산업과
  - 여성복지과 → 가정복지과
  - 도시과 → 도시계획과
  - 환경위생과 → 위생과
- 한시기구인 본청 주민자치과,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정식기구로 전환함.(안 부칙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녹지공원관리과를 도시국 소관으로 했는데 걱정하다고 생각하는지?</p> <p>○ 오정구 자전거문화팀이 있는데 구청보다는 시에 자전거문화팀을 두고 시 차원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?</p> <p>○ 복지국 가정복지과 장묘문화팀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는지?</p> <p>○ 정보통신기반팀이 행정·통신·전산 3복수 직렬인데 통신·전산 2복수 직렬이 맞다고 보는데?</p> <p>○ 오정구청은 통신직이 없어 사용승인전 검사를 전산직이 하는데 통신직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?</p> <p>○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시민 315명, 김포시가 290명, 부천시 425명이라 하는데 조직개편되면 얼마나 되며 적정인구수는?</p> <p>○ 복지국에 위생과가 있을 정도의 업무가 없다고 보며 보건소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</p> <p>○ 도시국 도시계획과 입지지원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?</p>	<p>○ 업무형평성과 국별 안배를 보았을 때 도시국 걱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.</p> <p>○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.</p> <p>○ 관련부서장의 건의와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입니다.</p> <p>○ 현재 행정이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규칙으로 통신·전산 직렬로 할 것입니다.</p> <p>○ 그것은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.</p> <p>○ 약 400여명 정도이며 35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며 우리 시 여건상 400명 정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○ 보건직 쪽에서 그와관련 대안을 주지 못했고 현재로선 여기까지 조직진단이 하였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</p> <p>○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.</p>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주차단속 철저히 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?</p>	<p>○ 좋은 의견이라고 보며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</p>
<p>○ 총액인건비제는 좋은 취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분석자료가 있습니까?</p>	<p>○ T/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이와 관련 관계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바 있으며 분석자료도 있습니다.</p>
<p>○ 시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조직개편안 이라고 보는데?</p>	<p>○ 향후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
<p>○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된 사항 중 조직개편안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는 지?</p>	<p>○ 전문기관 용역의뢰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자문을 받았고 그 당시 조직개편안하고 지금 안하고 많이 바뀌었음.</p>
<p>○ 향후 조직개편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 인지?</p>	<p>○ 이번 조직개편은 총액인건비제 관련하여 하는 것이고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
<p>○ 앞으로 조직진단을 계속 자체진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?</p>	<p>○ 전에 서울대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나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데 목적으로 자료요구가 많고 실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비효율적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용역관계는 의회와 상 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.</p>
<p>○ 업무 효율성에 따라 국이나 과에 대한 조정을 의회에서 해주어도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?</p>	<p>○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</p>
<p>○ 조직개편 문제와 더불어 조직의 순환성 인사의 객관성이 중요한데 조직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객관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지?</p>	<p>○ 능력위주, 성과위주의 인사할 것이며 조직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/p>

#### 4. 토론요지

##### 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##### 나. 반대토론

○ 조직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안이 작성된 것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#### 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###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99호
의결 연월일	2005. 7. 15 (제120회)

제안년월일 : 2005년 7월 14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일부 국 및 과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소관 부서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일부 과를 국별 안배와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 소속 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.

## 2. 주요골자

- “환경수도국”을 “수도국”으로, “도시국”을 “도시주택국”으로, “복지국”을 “복지환경국”으로 명칭변경.(안 제5조)
- 환경수도국 소속의 “환경보전과, 청소과”와 도시국 소속의 “녹지공원과”를 복지국 소속으로 변경.(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)
- 건설교통국 소속 “도시철도과”를 도시국 소속으로(안 제10조의3 및 제11조)

#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중 “복지국, 환경수도국, 도시국” 을 “복지환경국, 수도국, 도시주택국” 으로 한다.

안 제10조 제1항중 “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”를“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, 환경보건과, 청소과, 녹지공원과”로 한다.

안 제10조 제2항중 “제5호 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”, “제6호 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”, “제7호 도시녹화·공원조성·산림환경·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 신설

안 제10조의2제1항중 “환경수도국에 환경보건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”를 “수도국에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”로 한다.

안 제10조의2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.

안 제10조의3제1항중 “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녹지공원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”를 “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도시철도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”로 한다.

안 제10조의3제2항중 제3호 “도시녹화·공원조성·산림환경·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을 “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, 부천 소사·원시간 복선전철 및 경량 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중 “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도시철도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”를 “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2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, 기획재정국, 경제문화국, <u>복지환경국</u> 건설교통국을 둔다.</p>	<p>제5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-----<u>복지국, 환</u> <u>경수도국, 도시국</u> ----- -----.</p>	<p>제5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-----<u>복지환경국,</u> <u>수도국, 도시주택국</u>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<u>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, 여성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환경위생과를 둔다.</u></p> <p><u>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<u>1. 서민생활보호대책, 장애인복지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여성정책·여성복지 및 노인복지증진·보육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삭제</u></p> <p><u>4. 환경·위생의 종합기획조정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소년육성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10조(복지국에 두는 과) ①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를 둔다.</p> <p><u>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<u>1. 서민생활보호대책, 장애인복지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여성정책·건강가정·노인복지증진·보육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·사회체육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위생행정·위생지도·위생민원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10조(복지환경국에두는 과) <u>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, 환경보건과, 청소과, 녹지공원과를 둔다.</u></p> <p><u>②복지환경국장-----</u> -----</p> <p>1.(개정안과 같음) 2.(개정안과 같음) 3.(개정안과 같음) 4.(개정안과 같음) 5.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<u>6.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시행, 음식물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7.도시녹화·공원조성·산림환경·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0조의2(환경수도국에 두는과)  <u>①환경수도국에 환경보전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.</u>  <u>②환경수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 1. 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 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 2. 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 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3. 상수도특별회계 예산·집행</p>	<p>제10조의2(수도국에 두는 과)  <u>①수도국에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</u>  <u>②수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u>  1. 상수도특별회계 예산·집행·결산, 수도검침·요금부과·징수·채납관리에 관한 사항  2. 수도시설·급수·급수공사·탐사·누수수리·계량기관리에 관한 사항  3. 환경관리·정수·정수시설 운영·시설물 개보수, 먹는물검사에 관한 사항  4. 하수행정·하수처리장 운영·하수시설관리·하수관망 정비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0조의3(도시국에 두는 과)  <u>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녹지공원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를 둔다.</u>  <u>②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 1. 도시행정·도시계획·입지지원·도시정비·지구단위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  2. 택지개발·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 3. 도시녹화·공원조성·산림환경·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</p>	<p>제10조의3(도시주택국-)  <u>①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도시철도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-----.</u>  <u>②도시주택국장-----</u>  ---  1.(생략)  2.(생략)  3.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, 부천 소사·원시간 복선전철 및 경량전철사업등에 관한 사항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서민생활보호대책, 장애인복지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p> <p>2. 여성정책·여성복지 및 노인 복지증진·보육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삭제</p> <p>4. 환경·위생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</p> <p>5. 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</p>	<p>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서민생활보호대책, 장애인복지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p> <p>2. 여성정책·건강가정·노인 복지증진·보육에 관한 사항</p> <p>3. 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·사회체육에 관한 사항</p> <p>4. 위생행정·위생지도·위생민원에 관한 사항</p>	<p>②복지환경국장 -----</p> <p>-----</p> <p>1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시행, 음식물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 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p> <p>7. 도시녹화·공원조성·산림환경·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0조의2(환경수도국에 두는 과)①환경수도국에 환경보전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.</p> <p>②환경수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 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2. 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 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p> <p>3. 상수도특별회계 예산·집행</p>	<p>제10조의2(수도국에 두는 과)①수도국에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</p> <p>②수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상수도특별회계 예산·집행 ·결산, 수도검침·요금부과·정수·체납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2. 수도시설·급수·급수공사·탐사·누수수리·계량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3. 환경관리·정수·정수시설 운영·시설물 개보수, 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</p> <p>4. 하수행정·하수처리장 운영·하수시설 관리·하수관망 정비 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 <u>건설교통국에 도시과, 도로과,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건축과</u>  <u>를 둔다.</u>  ②<u>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도시계획·도시정비·지구단위 및 지적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도로시설·유지·관리 및 도로안전 가로정비,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교통행정, 교통기획, 교통지도, 운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교통시설 및 주차정책,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공동주택, 일반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	<p>4. <u>공동주택, 일반건축물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u>  5. <u>공용건축물 시설공사,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 <u>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도시철도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</u>  ②<u>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교통행정, 교통기획, 교통지도, 운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교통시설 및 주차정책,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도로행정·도로시설유지·관리 및 도로안전, 가로정비,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, 부천 소사·원시간 복선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차량행정, 차량등록, 자동차관리 및 방치차량처리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<u>재난관리·복구지원·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	<p>4.(개정안과 같음)  5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①<u>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</u>  ②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(개정안과 같음)</li> <li>2.(개정안과 같음)</li> <li>3.(개정안과 같음)</li> </ol> <p>(삭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(개정안과 같음)</li> <li>5.(개정안과 같음)</li> </ol>

#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99호
의결 년월일	2005. 7. 15 (제120회)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5

제안자 : 이옥수 의원 등 11명

## 1. 수정이유

- 행정조직은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능률 극대화로 86만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으로써 비대한 局 단위조직의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초래하고, 과소한 局 단위 조직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局간 사무의 적정배분·분담을 통하여 업무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고
- 행정복지위원회 수정(안)중 복지환경국의 조직체계는 7課 인 반면 수도권국의 조직체계는 4課에 불과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특히 수도권국장의 분장 사무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·집행·결산·수도검침·요금부과·징수·채납관리에 관한사항, 하수행정·하수처리장 운영·하수시설관리·하수관망 정비 등 상·하수도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 배분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국 소관 환경보전과, 청소과를 환경수도국으로 하며, 복지국 소관 녹지공원과는 도시기반시설로써 공원시설의 확충 등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도시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도시주택국의 도시철도과를 건설

교통국으로 변경하여효율적 업무수행 및 인력관리가 가능 하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함이 바람직함.

## 2. 주요골자

- 복지환경국을 “복지국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.
- 수도국을 “환경수도국”으로 명칭 변경한다.
- 도시주택국을 “도시국”으로 명칭 변경한다.
- 복지국에 두는 과중 “환경보전과, 청소과”를 환경수도국에 두는 과로 한다.
- 복지국에 두는 과중 “녹지공원과”를 도시국에 두는 과로 한다.
- 복지국장의 분장사무중 “환경행정,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”, “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”을 환경수도국장의 분장사무로 한다.
- 복지국장의 분장사무중 “도시녹화, 공원 조성, 산림환경, 공원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을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로 한다.
-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중 “도시철도과”를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한다.
- 도시주택국장의 분장사무중 “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, 부천·원시 간 복선 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”을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한다.

##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중 “복지환경국, 수도국, 도시주택국”을 “복지국, 환경수도국, 도시국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중 “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, 환경보전과, 청소과, 복지공원과”를 “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2항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.

안 제10조의2제1항중 “수도국에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”를 “환경수도국에 환경보전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청소과, 하수과”로 한다.

안 제10조의2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“제1호 내지 제4호”를 “제3호 내지 제6호”로 한다.

1. 환경행정,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,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
2. 청소행정,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에 관한 사항

안 제10조의3제1항중 “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도시철도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”를 “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녹지공원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”로 한다.

안 제10조의3제2항제3호 “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부천소사~원시 간 복선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녹화, 공원조성, 산림환경, 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중 “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”를 “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도시철도과, 차량관리과, 재난관리과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 (개 정 안)	개 정 안 (행정복지위원회수정안)	수 정 안 (수정동의 발의안)
<p>제5조(국의 설치)</p> <p>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, 기획재정국, 경제문화국, <u>복지국</u>, <u>환경수도국</u>, <u>도시국</u>, <u>건설교통국</u>을 둔다.</p>	<p>제5조(국의 설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 <u>복지환경국</u>, <u>수도국</u>, <u>도시주택국</u>, --</p> <p>----- .</p>	<p>제5조(국의 설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 <u>복지국</u>, <u>환경수도국</u>, <u>도시국</u>, --</p> <p>-----.</p>
<p>제10조(복지국에 두는과)</p> <p>①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 위생과를 둔다.</p> <p>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4.(생 략)</p>	<p>제10조(<u>복지환경국</u>에 두는과)</p> <p>①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 위생과, <u>환경보전과</u>, <u>청소과</u>, <u>녹지공원과</u>를 둔다.</p> <p>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6.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p> <p>7.도시녹화, 공원조성, 산림환경, 공원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</p>	<p>제10조(복지국에 두는과)</p> <p>①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 위생과를 둔다.</p> <p>②복지국장은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~7. &lt;삭 제&gt;</p>

현행 (개정안)	개정안 (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)	수정안 (수정동의 발의안)
<p>제10조의2(환경수도국에 두는 과)</p> <p>①환경수도국에 환경보전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.</p> <p>②환경수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환경행정,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2. 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p> <p>3.~6.(생략)</p>	<p>제10조의2(수도국에 두는 과)</p> <p>①<u>수도국</u>에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.</p> <p>②<u>수도국</u>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2. &lt;삭제&gt;</p> <p>3.~6.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의2(환경수도국에 두는 과)</p> <p>①----- 환경보전과, 청소과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<u>환경수도국</u>장은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환경행정,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</u>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~6.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의3(도시국에 두는 과)</p> <p>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<u>녹지공원과</u>, 건축과, 시설공사과를 둔다.</p> <p>②도시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	<p>제10조의3(<u>도시주택국</u>에 두는 과)</p> <p>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, <u>도시철도과</u>를 둔다.</p> <p>②<u>도시주택국</u>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의3(<u>도시국</u>에 두는 과)</p> <p>①-----</p> <p>----- <u>녹지공원과</u>,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<u>도시국</u>장은 -----</p> <p>-----</p> <p>1.~2.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            행 (개 정 안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(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(수정동의 발의안)</p>
<p>3.도시녹화, 공원조성, 산림환경, 공원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.~5.(생 략)</p> 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<u>도시철도과</u>, 차량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3.(생 략) 4.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, 부천·원시간 복선 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 5.~6.(생 략)</p>	<p>3. &lt;삭 제&gt;</p> <p>4.~5.(현행과 같음) 6. <u>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, 부천·원시간 복선 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3.(현행과 같음) 4. &lt;삭 제&gt;</p> <p>5.~6.(현행과 같음)</p>	<p>3.도시녹화, 공원조성, 산림환경, 공원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.~5.(개정안과 같음) 6. &lt;삭 제&gt;</p> 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----- ----- <u>도시철도과</u>, ----- ----- ②----- ----- 1.~3.(개정안과 같음) 4.<u>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사업, 부천·원시간 복선 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</u> 5.~6.(개정안과 같음)</p>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소 : 시립도서관

제3조제2항중 “사업소장·단장” 을 “사업소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복지환경국” 을 “복지국, 환경수도국, 도시국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주민자치과” 를 “자치행정과” 로 하고, 동조 제2항제2호중 “생활환경정비, 민간협력” 을 “지역기반보호, 민간협력, 생활환경정비” 로 하며,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보기획·정보운영·지역정보·통신·정보통신기반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중 “기획예산과” 를 “정책기획과, 예산법무과” 로 하고, 동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 행정의 종합기획·정책개발·심사분석·성과관리·혁신분권·통계에 관한 사항

2. 예산의 편성 및 집행·디지털재정·경영사업·법무·의회협력에 관한 사항

3.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·시세운영·세외수입·수납관리·법원민

원·차량민원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
4. 경리·계약·복식부기·재산관리·청사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제9조제1항중 “지식산업과, 문화예술과”를 “문화산업과, 문화예술과, 농산지원과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기업지원·지식산업·산업정책·기술지원·공장설립·무역진흥에 관한 사항

3. 문화산업·만화산업·문화공간조성에 관한 사항

5. 농업행정·축산유통·자연학습·도시원예에 관한 사항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복지국에 두는 과) ①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를 둔다.

②복지국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서민생활보호대책, 장애인복지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
2. 여성정책·건강가정 및 노인복지증진·보육에 관한 사항
3. 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·사회체육에 관한 사항
4. 위생행정·위생지도·위생민원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환경수도국에 두는 과) ①환경수도국에 환경보전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.

②환경수도국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환경행정 · 환경정책 및 대기관리 ·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
2. 청소행정 ·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· 시행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· 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 · 적환장 ·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
3.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· 집행 · 결산, 수도검침 · 요금부과 · 징수 ·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4. 수도시설 · 급수 · 급수공사 · 탐사 · 누수수리 · 계량기관리에 관한 사항
5. 환경관리, 정수, 정수시설 운영 · 시설물 개보수, 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
6. 하수행정 · 하수처리장 운영 · 하수시설관리 · 하수관망 정비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3(도시국에 두는 과) 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녹지공원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를 둔다.

②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도시행정 · 도시계획 · 입지지원 · 도시정비 · 지구단위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
2. 택지개발 · 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
3. 도시녹화 · 공원조성 · 산림환경 ·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
4. 공동주택, 일반 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

5. 공용건축물 시설공사,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도시철도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

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교통행정·교통기획·교통지도·운수에 관한 사항
2. 교통시설 및 주차정책,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
3. 도로행정·도로시설유지·관리 및 도로안전, 가로정비,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
4.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, 부천 소사·원시간 복선전철 및 경량 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
5. 차량행정·차량등록·자동차관리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
6. 재난관리·복구지원·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

제15조중 “사업소와 사업단을” 를 “사업소” 로 한다.

제16조 제목 “(소장 또는 단장)” 을 “(관장)” 으로 하고, 동조 본문중 “각 사업소에 소장 또는 단장을 두며, 소장 또는 단장은” 을 “사업소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” 으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소관사무)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도서관의 수서 및 정리

2. 도서의 열람·대출 및 장서관리
3.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
4.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
5.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조례 제196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  
조례 제204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  
별표 1중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란, 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란, 부천시  
도시개발사업소란, 부천시시설사업소란, 부천시차량관리사업소란 및 부  
천시지하철건설사업단란을 각각 삭제하고, 동표의 기관명란중 “부천시  
농산지원사업소”를 “부천시농산지원과”로, “부천시청소사업소”를  
“부천시청소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사업소 : 상하수도사업소, 농산지원사업소, 청소사업소, 녹지공원관리사업소, 시립도서관, 도시개발사업소, 시설사업소, 차량관리사업소, 지하철건설사업단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사업소 : 시립도서관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국장 및 실장·과장의 직급 등) ①(생략)</p> <p>② <u>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사업소장·단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3조(국장 및 실장·과장의 직급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<u>사업소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5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, 기획재정국, 경제문화국, <u>복지환경국, 건설교통국</u>을 둔다.</p>	<p>제5조(국의 설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복지국, 환경수도국, 도시국,</u>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총무국에 총무과, 주민자치과, 정보통신과, 시민봉사과를 둔다.</p> <p>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민자치·시정시책·선거·여론관리·<u>생활환경정비·민간협력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<u>정보기획·지역정보·정보운영·통신</u>에 관한 사항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7조(총무국에 두는 과) ①----- -----<u>자치행정과</u>----- -----</p> <p>②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지역기반보호·민간협력·생활환경정비</u>-----</p> <p>3. <u>정보기획·정보운영·지역정보·통신·정보통신기반</u>에 관한 사항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기획재정국에 <u>기획예산과, 세정과, 회계과</u>를 둔다</p> <p>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<u>시 행정의 종합기획·예산의 편성 및 집행·디지털재정·혁신분권·경영사업·심사분석·성과관리·의회협력·법무·통계</u>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·세무조사·세외수입·수납 및 체납관리</u>에 관한 사항</p>	<p>제8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----- -----<u>정책기획과, 예산법무과</u>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</p> <p>1. <u>시 행정의 종합기획·정책개발·심사분석·성과관리·혁신분권·통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예산의 편성 및 집행·디지털재정·경영사업·법무·의회협력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<u>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·시세운영·세외수입·수납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3. <u>경리·계약·복식부기·재산관리·청사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9조(경제문화국에 두는 과) ①경제문화국에 지역경제과, 기업지원과, 지식산업과, 문화예술과를 둔다.</p> <p>②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기업지원·입지지원·기술지원·공업인허가·무역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지식산업·만화산업·문화산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리·법원민원·차량민원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경리·계약·복식부기·재산관리·청사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9조(경제문화국에 두는 과) ①----- 문화산업과, 문화예술과, 농산 지원과-----</p> <p>②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기업지원·지식산업·산업정책·기술지원·공장설립·무역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문화산업·만화산업·문화공간조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농업행정·축산유통·자연학습·도시원예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10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, 여성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환경위생과를 둔다.</p>	<p>제10조(복지국에 두는 과) ①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체육청소년과, 위생과를 둔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민생활보호대책, 장애인복지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여성정책·여성복지 및 노인복지증진·보육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삭제</li> <li>4. 환경·위생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민생활보호대책, 장애인복지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여성정책·건강가정·노인복지증진·보육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체육진흥·체육시설·청소년육성·사회체육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위생행정·위생지도·위생민원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제10조의2(환경수도국에 두는 과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환경수도국에 환경보전과, 청소과, 수도행정과, 수도시설과, 정수과, 하수과를 둔다.</li> <li>②환경수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환경행정·환경정책 및 대기관리·수질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청소행정·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·대형폐기물 처리, 쓰레기매립장·적환장·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상수도특별회계 예산·집행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· 결산, 수도검침·요금부과·정수·체납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4. 수도시설·급수·급수공사·탐사·누수수리·계량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5. 환경관리·정수·정수시설 운영·시설물 개보수, 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</p> <p>6. 하수행정·하수처리장 운영·하수시설 관리·하수관망 정비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</p> <p>제10조의3(도시국에 두는 과) 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녹지공원과, 건축과, 시설공사과를 둔다.</p> <p>②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도시행정·도시계획·입지지원·도시정비·지구단위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</p> <p>2. 택지개발·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3. 도시녹화·공원조성·산림환경·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 <u>건설교통국에 도시과, 도로과,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건축과를 둔다.</u></p> <p>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도시계획·도시정비·지구단위 및 지적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도로시설·유지·관리 및 도로안전, 가로정비,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교통행정, 교통기획, 교통지도, 운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교통시설 및 주차정책,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공동주택, 일반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<u>공동주택, 일반건축물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공용건축물 시설공사,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제11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 <u>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, 교통시설과, 도로과, 도시철도과, 차량관리과,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</u></p> <p>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교통행정, 교통기획, 교통지도, 운수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교통시설 및 주차정책,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도로행정·도로시설유지·관리 및 도로안전, 가로정비,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, 부천 소사·원시간 복선전철 및 경량전철사업 등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차량행정, 차량등록, 자동차관리 및 방치차량처리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<u>재난관리·복구지원·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설치)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<u>사업소와 사업단을</u> 둔다.</p>	<p>제15조(설치)----- ----- -----<u>사업소를</u> -----</p>
<p>제16조(<u>소장 또는 단장</u>) 각 사업소에 <u>소장 또는 단장</u>을 두며, 소장 또는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16(<u>관장</u>) 사업소에----- <u>관장</u>을 두며, 관장은----- ----- -----</p>
<p>제17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 또는 단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<u>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	<p>제17조(소관사무) 시립도서관장은 <u>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1. <u>상하수도사업소</u></p> <p>가. <u>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확충 종합 계획 수립·시행</u></p> <p>나. <u>상수원관리 및 원수개발</u></p> <p>다. <u>상하수도 시설물 유지·보수관리 및 수질검사</u></p> <p>라. <u>재난관리·복구지원·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농산지원사업소</u></p> <p>가. <u>농업 및 축정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나. <u>농촌지도·자연학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청소사업소</u></p> <p>가. <u>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·시행</u></p> <p>나. <u>쓰레기 매립장 및 적환장 유지관리</u></p> <p>다. <u>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업무</u></p> <p>라. <u>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·시행</u></p> <p>마. <u>폐기물재활용센터운영 및 분리수거</u></p> <p>3의2. <u>녹지공원관리사업소</u></p> <p>가. <u>도시녹화 및 산림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나. <u>공원조성 및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시립도서관</u></p> <p>가. <u>도서의 수서 및 정리</u></p>	<p>1. <u>도서의 수서 및 정리</u></p> <p>2. <u>도서의 열람·대출 및 장서관리</u></p> <p>3. <u>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</u></p> <p>4. <u>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</u></p> <p>5. <u>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나. 도서의 열람·대출 및 장서관리</u></p> <p><u>다.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</u></p> <p><u>라.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</u></p> <p><u>마.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도시개발사업소</u></p> <p><u>가. 택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나.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6. 시설사업소</u></p> <p><u>가. 공용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나. 공공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7. 차량관리사업소</u></p> <p><u>가. 차량행정·차량등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나. 자동차관리 및 방치차처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8. 지하철건설사업단</u></p> <p><u>가.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나. 부천 소사·원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다. 부천경량전철사업등에 관한 사항</u></p>	

현행	개정안
<p>부칙&lt;2003. 8. 11 조례 제1965호&gt;            ①(시행일)(생략)            ②(한시기구 적용시한)시본청 총  <u>무국 주민자치과의 기구설치 기한</u>  <u>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부칙&lt;2003. 8. 11 조례 제1965호&gt;            ①(시행일)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제&gt;</u></p>
<p>부칙&lt;2004. 11. 11 조례 제2043호&gt;            ①(시행일)(생략)            ②(한시기구 적용시한)지하철건설  <u>사업단의 기구설치 기한은 2007년</u>  <u>6월 30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부칙&lt;2004. 11. 11 조례 제2043호&gt;            ①(시행일)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제&gt;</u></p>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1]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	[별표 1] 시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
기관명	소재지	기관명	소재지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부천시상하수도 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<삭 제>	
부천시농산지원 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	부천시농산지원 과	----- -----
부천시청소사업 소	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	부천시청소과	----- -----
부천시녹지공원 관리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<삭 제>	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·	·	·	·
부천시도시개발 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<삭 제>	
부천시시설사업 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<삭 제>	
부천시차량관리 사업소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<삭 제>	
부천시지하철건 설사업단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<삭 제>	

## 기구 및 정원채정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

#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2조 및 제3조
- 「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1조

### 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

-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서 정원과 상위직급 채정,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,
-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 및 인력을 중점 보강하는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· 일반직

합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93	1	6	26	22	27	11

· 기능직

합계	6급	7급	8급	9급	10급
2	1	-	-	1	-

### 3. 비용소요 내역

- 인력증원에 따른 연간 추계 소요 인건비

구분	총계	승진에 따른 차액 인건비						9급 신규
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
증원인원	95	82	1	6	26	22	27	95
소요예산(백만원)	3,485	635	9	72	241	148	165	2,850